

WTO 농업분야 논의 동향*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WTO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개의 트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GATT에서부터 시작된 제 9차 다자간 협상인 DDA 농업협상그룹에서의 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WTO 농업위원회회의에서의 논의이다.

DDA 협상은 2001년 시작된 이래 2008년도에 타결직전까지 갔다가 좌절된 이후에는 추진동력을 잃고 최근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협상은 분야별로 계속 1년에 몇 차례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이 기술적인 분석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DDA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원인을 주제네바 최석영 대사는 경제적 자신감 부족, 협상파트너 간 신뢰부족, 정치적 동력부족을 꼽고 있다. 즉,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실업문제로 인해 글로벌한 무역자유화를 주장하기 쉽지 않고,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특별대우를 요구하면서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 점, 그리고 미국과 EU 등이 다자협상보다 비교적 이해조정이 용이한 지역무역협정에 더 치우치는 점 등 때문에 DDA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상황 때문에 2011년 12월에 열린 WTO 제 8차 각료회의에서는 종전 DDA

* (jhsong@krei.re.kr, 02-3299-4187)

1) 나라경제 2013년 1월호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기대하며” .

협상의 원칙이었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보다는 우선 타결하기 쉬운 분야를 대상으로 조기수확(early harvest)하자는 방식이 제기되었다. 즉 최빈개도국(LDC), 무역 원활화, 비관세장벽 등 큰 쟁점 없이 합의 가능한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소규모 타결(small package)을 모색하는 접근방법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제네바에서는 2012년에 소규모 타결을 위한 분야별·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협상 진전방안이 모색된 바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정보통신협정(ITA) 개정협상,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정부 조달 가입협상 등이 병렬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에도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는지 매우 불확실하지만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에서 일부 분야에서라도 조기수확이란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내년 이후 DDA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WTO 농업위원회회회는 UR농업협정 제 17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매년 정례적으로 4차례 정도 모이는데 각 회원국이 UR에서 약속한 시장접근분야와 보조감축분야의 이행상황을 통보한 내용을 서로 점검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2. DDA 협상 논의 동향

2011년 이전까지의 DDA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송주호 외(2009), 문한필 외(2011), 이정환 외 (2011)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2012년 이후의 논의 동향 위주로 기술하였고 2011년 이전 협상 경과는 마지막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DDA 농업분야 협상은 농업위원회회가 아닌 농업협상그룹에서 논의되는데 의장은 뉴질랜드의 주제네바 대사인 존 애딩크(John Adank)이며, 2012년에는 3월, 9월, 11월 3차례 개최되었다.²⁾

2.1. 3월의 협상 경과

2011년 12월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으며 뭔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공통으로 인식한 이후 첫 번째로 열린 2012년 3월의 비공식 전체회의(open-ended informal meeting)에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일부 회원국들은 먼저 자국의 관심사항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일부는 그동안 회원국들 간의 많은 노력 끝에 상당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성과를 새로운 접근법 때문에 잘못하면 후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최근까지 농업협상은 10개의 잔존 쟁점에 대해 집중해

2) 월별 주요 협상내용은 WTO 홈페이지의 WTO: 2012 News Items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왔는데 의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일괄타결에 앞서 어떤 분야가 조기 타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이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다. 결국, 의장은 앞으로 회원국들 간에 많은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하자고 촉구하고, 진전사항이 생기면 보고하겠지만 다음번 회의 일정은 아직은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조기수확이 가능한 분야로 수출경쟁³⁾을 거론하였으며, 일부는 면화에 대해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는 수출경쟁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인 지리적 표시제도 농업분야 협상에서 항상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수 회원국들은 농업협상이 전체 DDA 협상에서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의장을 도와 다른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 회의에선 G33을 대표하여 인도, 케언즈그룹을 대표하여 호주, 소규모취약경제국을 대표하여 도미니카 공화국, 최근의 WTO 가입국으로 온두라스와 대만, G10을 대표하여 스위스, 그리고 아르헨티나, EU, 쿠바, 중국 등이 발언하였다.

2.2. 9월의 협상경과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소집한 9월 28일 회의에서 G20을 대표하여 브라질은 두 가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소개했는데 하나는 쿼터초과세율보다 쿼터 내 세율이 낮은 TRQ가 수입업자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의 TRQ 관리에 관한 이해(understanding)차원의 문서였으며, 다른 하나는 TRQ 관리와 수출경쟁에 관한 사무국의 분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브라질은 G20국가들이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아직 중국이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록 초안상태이긴 하지만 제안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G20이 아닌 자국의 관심사항이라면서 수출경쟁과, 유사한 이슈인 면화보조도 조기에 합의될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또한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농업과 관련이 있는 주제들⁴⁾에 대해서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G20의 제안서가 회의 개시와 더불어 회람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충분한

3) 수출보조와 수출신용, 식량지원, 그리고 숨겨진 수출보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국영무역 포함.

4) SPS 협상에서의 특별 중재 방안, 무역원활화에서의 부패가능 농산물에 대한 규정.

검토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예비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TRQ 관리와 수출경쟁은 2008년 4차 수정안에 이미 다른 분야와 균형을 맞춰 상당한 부분이 합의가 되었는데 이 분야만 떼어내 다시 거론한다면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 분야들이 조기수확분야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라질은 작년 각료 회의 때 통상장관들이 잠재적으로 조기 수확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G10을 대신하여 스위스는 수출경쟁에는 수출제한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G20 국가들은 브라질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의장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모임이 필요하며 추후 일자를 통보하겠다고면서 회의를 종결하였다.

<G20의 TRQ 관리강화 제안서>

2012년 10월 브라질이 G20국가들을 대표(G20그룹의 일원인 중국은 동 건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어서 입장표명 유보)하여 제출한 4페이지짜리 비공식문서(non-paper)에서는 WTO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과 농산물 TRQ를 수입하기 위한 TRQ 관리방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서 TRQ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즉 쿼터 미소진을 억제하기 위해 TRQ 소진율이 65% 이하일 때에는 특별 관리를 하여 소진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2.3. 11월의 협상 경과

의장은 지난 9월 이후 그동안 자신이 주요국들과 접촉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주요 목적은 DDA농업 모델리티의 광범위한 내용 가운데 2013년 12월 각료회의 이전에 어느 분야라도 다른 부분과 달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찾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 G20 의 제안서는 TRQ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며 일부 국가는 각국의 TRQ 관리방안이 너무 통제적이어서 수출하기가 힘들고 수출국들의 시장접근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20은 또한 사무국이 각국의 TRQ 활용과 수출경쟁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G10 국가는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수출제한에 관한 자료도 수집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최근에 자국 내 빈곤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특별대우를 희망하는 G33개도국(인도네시아가 대표)들은 빈곤한 농민을 지원하여 식량안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록 국내보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하는 내용을 조기수확범위에 포함해 달리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일부 국가는 조기 합의를 위한 다른 후보 분야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기 수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주제의 중요성에는 이해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들 분야를 분리하여 먼저 타결한다면 그 동안 농업분야에서, 그리고 DDA 전체를 통해 애써 맞춰온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의장은 그 동안 회원국들이 TRQ 관련 이슈를 해결하려고 보여 온 관심은 무척 고무적이지만 논의를 통해 여러 민감한 내용들이 드러나면서 이 분야가 선정된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을 느꼈다고 발언하였다. 그동안 의장이 접촉한 국가들 중에는 G20의 TRQ 관리강화 제안이 조기 수확 가능 분야가 될 지에 대해 명백히 'No'라고 한 회원국도 없지만, 그렇다고 조건 없이 'Yes'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G20의 TRQ 관리 강화 방안에는 쿼터가 잘 활용되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쿼터가 지속적으로 충족이 미달되면 수입국 정부는 미리 정해진 대로 수입에 지장을 주는 조치들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비록 TRQ 관리 관련 규정들이 광범위한 농업분야 모델리티에서 안정적인 조항()이 없어서 합의에 가까운)에 속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그 동안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 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G33국가들의 식량안보 제안은 빈곤한 농민들로부터 지지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비축하는 정부의 조치를 시장을 왜곡할 경우 사용한도에 제한을 받는 국내보조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의 조기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무역을 왜곡하지 않거나 최소한도로만 왜곡하는 정도에 그쳐서 사용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허용보조(Green Box)의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G33 국들은 현재의 모델리티에도 관련 규정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안정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발언국들은 현재의 기후변화라는 환경과 높은 곡물가격 하에서는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러나 제안에 대해서는 G33과 G20 그룹들은 적극 지지한 반면, 일부에서는 이 이슈는 복잡한 이슈이며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고 하였다. 일부 국가는 이 수정제안이야 말로 전체 모델리티에서 떼어내어 별도로 합의해야 하며, 공공비축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는 규정이 되고 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이 제안을 주창하는 국가들은 이 조항이 어떻게 운용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일부는 아직 이 제안은 다자간 깊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고, 또 어떤 국가는 DDA를 타결하여 농산물 무역을 개혁하면 식량안보는 크게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회의 결과, 사무국에서는 TRQ 관리, 수출경쟁 및 수출제한에 관한 실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의장은 제안서의 내용에 대해 미리 너무 앞서 협상하지 말고 문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내용을 보고 코멘트나 질문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G33의 개도국 식량안보 강화 제안서>

2012년 11월 인도네시아가 G33국가들을 대표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보조로 인정하도록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2(국내보조: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를 수정하자는 내용인데 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즉 정부의 일반적인 서비스 유형의 하나로 “개도국 농민의 정주, 농지개혁, 농촌개발, 농민의 생존 안보 등과 관련된 정책”을 추가하여 허용보조로 인정하자는 내용과 개도국정부가 저소득 농가의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부참조가격과 구매가격과의 차액을 AMS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4. 2013년 1월의 협상 경과

1월 18일의 2013년 첫 번째 비공식회의에서 농업협상그룹의장은 아직 2013년도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3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와 혹시 추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축적되고 회람되는 정보들이 2013년 협상의 촉매제가 되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논의들은 기술적인 부분과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구별되어야 하며, 셋째로 새로운 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안이 2013년 12월 3~6일의 발리 각료회의 전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들과 미리 협의를 거친 후에 빨리 제안을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3. WTO 농업위원회회의 논의 동향⁵⁾

WTO에서는 2012년에 농업위원회회의가 3월 21일(제65차), 6월 20일(제66차), 9월 20일(제67차 회의), 11월 14일(제68차 회의) 열렸다. 농업위원회회의는 UR 농업협정 제17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제18조에 의거 UR 협상 약속이행을 검토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5) 농업위원회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은 각 회의이후 사무국이 회의결과를 요약한 Summary Report of the Meeting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3.1. 3월 21일 농업위원회회의 논의 경과

3월까지의 농업위원회회의 의장은 Mr. Jonas Skei로서 노르웨이 사람이다. 3월의 제 65차 농업위원회회의에서는 약속이행과 관련된 11개의 질문 및 답변이 있었다. 이 중에는 코스타리카의 AMS 약속 이행, 이집트의 면화 수입금지 조치, 인도의 면화수출금지, 스위스의 수출보조, 캐나다의 아이스크림 판촉 이니셔티브, 브라질의 국내보조 약속, 중국의 면화 수매보유제도, 인도네시아의 일부 식품에 대한 수량제한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⁶⁾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2011년 9월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보조에 관해 통보하였기 때문에 2011년 11월의 제64차 농업위원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쌀 공공비축제 전환과 관련된 쌀 AMS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으며, 2012년 3월의 제 65차 농업위원회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AMS 계산 수정통보에 대한 호주의 질문이 있었다.

한편, 농업위원회회의 의장은 2011년 11월회의 이후 62개의 통보가 있었으며, 그중 미리 회람된 통보 중 질문이 접수된 통보가 22개 있었고, 질문이 없었던 통보는 24개였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통보 지연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농업위원회회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2년 3월까지 시장접근분야 TRQ 이행율에서는 미국은 2009년, EU는 2009년, 일본은 2010년, 한국은 2009년까지 통보한 상황이고, 국내보조에 관해서는 미국은 2009년, EU는 2007년, 일본은 2009년, 한국은 2008년까지 통보한 상황이다.

그 밖에 순식량수입국가(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y, NFIDC)목록에 안티구아, 버뮤다와 엘살바도르가 새로 포함되었다.

표 1 주요국의 WTO 통보 현황 (2012년 3월 현재)

구분	TRQ 이행율	SSG 발동실적	국내보조 실적	수출보조 실적
미국	2009	2010	2009	2009
EU	2009	2009	2007	2008
일본	2010	2010	2009	2010
중국	2009	-	2009	2009
스위스	2010	2011	2009	2008
캐나다	2010	2010	2007	2008
한국	2009	2010	2008	2008

주: 실적을 통보한 최종 년도를 의미함 즉, 미국은 TRQ 이행에 관해 2012년 3월 현재 2009년까지의 실적을 통보하였음.
 자료: WTO 문서 G/AG/GEN/86/Rev.9 (2012.3.9).

6) 자세한 내용은 WTO문서 (G/AG/W/94) 참고

3.2. 6월 20일 농업위원회회의 논의 경과

6월의 제66차 농업위원회회의에서는 2013년 3월까지 임기인 새로운 의장으로 바베이도스의 Ms. Emalene Marcus-Burnett를 선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약속이행과 관련된 8개의 질문 및 답변이 있었다(G/AG/W/96). 3월회의 이후 48개의 신규 통보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한편 미국은 농업위원회회의의 검토과정을 통해 회원국들의 농업정책에 대해 많은 걸 이해하게 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국내보조 통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종합세트가 의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 목적은 그동안 어떤 부분이 잘 기능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문제로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개선방안과 최선의 관행을 명백히 정리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제안이 시장가격지지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기 위함이라면 제안을 반대하며, 이러한 문제는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위원회회의가 아닌 협상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등이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제안은 국내보조통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것이며 농업위원회회의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업위원회회의 의장은 미국의 제안이 의제에 좀 늦게 추가되긴 했지만 농업위원회 기능에 관련된 제안은 어느 회원국들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 제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달라고 주문을 하였다.

3.3. 9월 20일 농업위원회회의 논의 경과

9월에 열린 제67차 정례 농업위원회회의에서는 바베이도스의 Ms. Emalene Marcus-Burnett 의장 주재로 열렸다. 6월 이후 27건의 통보가 있었으며, 이중 15개의 통보는 아무 질문이나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동안 이의가 제기된 8건에 대해서는 G/AG/W/103에 제시되었다.

의장은 다른 회원국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농업위원회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신속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앞으로 웹에 기반을 둔 Q&A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질의·답변과정이 어떻게 촉진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일본의 지난 6월회의 이후 수출제한에 관한 투명성 문제와 관련된 후속작업을 해왔다면서, 11월 회의까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4. 11월 14일 농업위원회회의 논의 경과

11월의 농업위원회회의에서는 신규 통보된 33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종전의 통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이 이어졌다. 중국은 EU가 가금육 수입관세를 키퍼로 전환하는 협상 의사에 대해 비록 90일 이내에 관심을 표명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농민들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EU가 중국의 관심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EU는 WTO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그동안 모니터링해온 바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전 세계의 식량원조는 31%나 줄어든 4.1백만 톤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부 국가는 2005년도의 홍콩 각료선언에 따라 2013년에 선진국들은 모두 수출보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부 국가는 동 문제는 DDA협상의 종료와 연결된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쌀 지원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있는데 행정법원의 판결 때문에 UR 협상에서 약속한 보조금 한도를 지킬 수 없으며 언제 가능한지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파키스탄 등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태국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쌀 가격지지 프로그램에 보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태국은 아직 필요한 정보를 수집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국과 파키스탄은 태국정부가 쌀을 시장가격보다 40% 높게 사들이고 있다며, 태국은 UR 당시 수출보조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는데 정부가 어떻게 방출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다.

EU도 설탕의 수출 물량에 관한 라이선스 일부가 연도를 이월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수출보조한도를 초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EU는 수출 라이선스는 매년 한도 내에서 발급되며, EU는 매년 라이선스를 수출보조 한도 내에서 발급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다수 국가들은 모든 회원국들의 감축약속은 당년도 실제 수출물량에 대해 준수되어야지 라이선스 발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제한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다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밀에 대해 수출제한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일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WTO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UR농업협정문 12조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수출제한을 취하기 전에 가능한 한 사전에 WTO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95년 WTO가 창립된 이래 수출제한에 대해서는

16개의 통보만 있었을 뿐 사실은 그보다 수출제한 조치는 더 많았다. 이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4. 기타 WTO 동향

4.1. 무역원활화 논의동향

무역원활화는 상품의 국경 간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히 하여 무역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이다. 보통 다자협상이라고 하면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관세 이외의 장벽, 즉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 NTB)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수출입 관련 행정을 체계화·투명화·예측 가능화·동조화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것이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8월 극적으로 타결된 소위 “July Package”에 따라 뒤늦게 DDA 협상에 공식 합류한 무역원활화 협상의 세부원칙 부속서 D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부속서 D는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그리고 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시행) 등 3개 조항의 명료화/개선 및 이를 통한 상품 이동 촉진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규범이 합의되어도 개도국(특히 극빈개도국(LDC))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적용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당초의 협상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음을 고려, 개도국(특히 극빈개도국)들을 위한 개도국우대(S&D) 제공 방안,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TA/CB) 제공 방안 등을 모색하는 협상도 병행중이다.

OECD연구에 의하면 현재 제네바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역원활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전 세계 교역액의 10%에 상당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⁷⁾ WTO 무역 통계에 의하면 2011년도의 수출총액은 17조 달러이므로 10%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무역원활화 협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012년 11월 무역원활화와 DDA라는 주제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DDA에서의 무역원활화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였다.

7) 무역원활화 서울 심포지엄 요약문 2012

4.2.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WTO 사무총장은 임기가 4년이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임이 가능하다. 현 사무총장인 Pascal Lamy는 재임을 하고 있으며 2013년 8월말로 임기가 끝나고, 신임 사무총장은 9월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2012년 12월말에 마감된 입후보자 등록에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장관까지 모두 9명이 등록하였다. 입후보자의 출신국은 등록 순으로 가나,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케냐, 요르단, 멕시코, 한국, 브라질이며 대부분 자국의 통상장관을 역임한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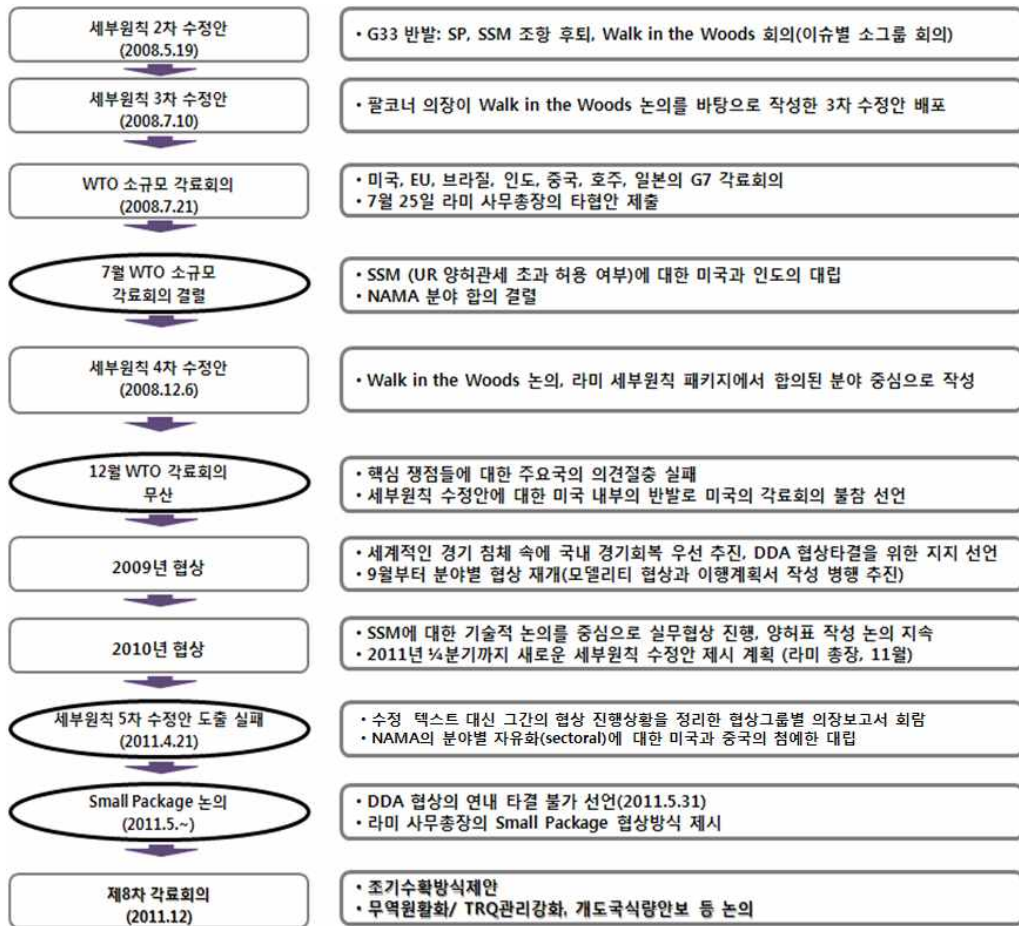
이들 후보자들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반이사회 공식회의에서 순번을 정해 자신

그림 1 DDA 농업협상의 전개과정(1)



의 비전 등 브리핑을 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이후 각 후보들은 지지를 촉구하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르면 일반이사회 의장은 각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및 지지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의의 하며,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자를 확인하고 해당 후보자가 사퇴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월 경 최종 단계에서 일반 이사회 의장은 컨센서스를 형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자의 성명을 제출하고 일반 이사회에 의한 선출을 권고한다. 하지만 선출기일까지 컨센서스에 의한 선출이 불가능할 시 최후의 수단으로 투표에 의한 선출가능성도 고려한다.

그림 2 DDA 농업협상의 전개과정(2)



주: 임송수 외(2008)의 <그림 2-1>을 편집·보완하였음.

참고문헌

- 문한필 외. 2011. 「DDA 농업협상 중간점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주호 외. 2009. 「DDA 농업협상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국내대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외. 2011. 「우리나라와 주요국 WTO 농업보조정책연구」. 농림수산식품부. GS&J 자문보고서. 2011.4.
- 임송수 외. 2008. 「DDA 농업협상 쟁점과 대응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8-4.
- 최석영. 2013. “다자통상체제 강화를 기대하며”, 「나라경제」. 2013년 1월호.
- WTO 2012. News Items.
- WTO 문서 G/AG/GEN/86/Rev.9 (2012. 3. 9).
- _____ G/AG/R/66(2012. 5. 9), 67(2012.9.3) 68(2012.11.1).
- _____ G/AG/W/94 (2012. 5. 7).
- _____ JOB/TF/115 Seoul Symposium on Trade Facilitation an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Summary of Outcome (2012.12.5).
- _____ JOB/AG/22. G33 Proposal on some elements of TN/AG/W/4/Rev. 4 for Early Agreement to Address Food Security Issues.(2012. 11. 13).
- _____ JOB/AG/20.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2012. 10. 5).